

#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 시행세칙

제정일 : 2001. 04. 30.

시행일 : 2026. 01. 22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 제100조 규정에 따라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이사회

제2조(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) ①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.

② 제1항의 정기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개시전 2개월 안에, 매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안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16.6.27.)

③ 추가경정 예산을 위한 이사회는 10월 이내로 소집할 수 있다.

④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. (신설 2016.6.27.)

제3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정관 제34조 제2항에 의거,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의 이사회 소집은 이 사 중에서 최 연장 이사가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4조(이사회 회의록 작성) 이사회의 회의록은 법인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 단, 법인사무국장이 유고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법인사무국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0.12.18.)

## 제3장 이사회의 각 분과위원회

제5조(각 분과위원회) 이사회에 인사분과위원회, 재정분과위원회, 장기발전위원회, 건축위원회,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둔다. 다만,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6.6.27., 2020.12.18.)

제5조의2(인사분과위원회) ① 인사분과위원회(이하 “본 위원회” 라 한다) 위원은 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(신설 2016.6.27., 개정 2026.1.22.)

②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교육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처리한다.

③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조직, 신설대학 등과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뜻한다.

④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정관 제43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뜻한다.

제5조의3(재정분과위원회) ① 재정분과위원회(이하 “본 위원회” 라 한다) 위원은 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(신설 2016.6.27., 개정 2020.12.18., 2026.1.22.)

②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처리한다.

제5조의4(장기발전위원회) ① 장기발전위원회(이하 “본 위원회” 라 한다) 위원은 임원 5인으로 구성한다.(신설 2016.6.27. 개정 2020.12.18.)

②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본 법인 및 설치학교의 발전에 관한사항과 수익사업체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 처리한다.

제5조의5(건축위원회) ① 건축위원회(이하 “본 위원회” 라 한다) 위원은 임원 7인으로 구성한다.(신설 2016.6.27. 개정 2020.12.18.)

②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본 법인 및 설치학교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.

제5조의6(기금운용심의회) ①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본 위원회” 라 한다)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, 서울여자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원, 직원 및 재학생 2명을 포함하고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(신설 2020.12.18., 개정 2021.4.26., 2022.12.7.)

②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본 법인의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.(개정 2021.4.26.)

제6조(위원의 임기)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6.6.27.)

제7조(위원임면)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서기위원은 이사장이 배정하여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 다만, 이사장과 총장은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
제8조(위원회 소집) ① 각 위원회는 이사장 명의로 소집하고,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위원회 사회자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. (개정 2016.6.27., 2020.12.18.)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(신설 2016.6.27.)

제9조(결의안 처리) 각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, 정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여 본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다.

제10조(위원회 회의록) 각 위원회 회의록은 법인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단, 법인사무국장이 유고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법인사무국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20.12.18.)

## 제4장 회 계

제11조(회계)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설치학교 재무규정과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라야 한다.

## 제5장 설치학교

제12조(총장과 부총장의 자격) ①정관 제43조 제1항과 제3항의 대학교 총장·부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.

1. 건학이념에 투철하고 학문과 지도력이 빼어난 자로 한다.
2. 헌신된 교회직분자로 한다.

②제1항에 의하여 임명된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3조(총장의 예우) 정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총장의 정년은 교원정년과 관계없이 예외로 한다.

제14조(규정의 제정 등) ① 정관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임용되는 서울여자대학교 교원임용에 따른 제 규정은 대학교에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(개정 2016.6.27.)

② 정관 제43조 제4항의 정년보장 교수임용은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두고 대학교에서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(개정 2016.6.27., 2020.12.18.)

③ 교육관계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 및 학교에서 따로 규정을 제정 및 개폐하되, 다만, 직제·인사·보수·복무 및 예·결산과 건축물의 신축·증축 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, 폐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신설 2022.6.9.)

제15조(임용의 위임) 정관 제43조 및 제84조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임용 중 일부를 각 설치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(신설 2022.6.9.)

제16조(교감의 임기) 화랑초등학교 교감의 임기는 직무대리(대행) 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(신설 2022.8.18.)

## 제6장 보 칙

제17조(세칙의 개정) 이 시행세칙 개정은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.

제18조(세칙의 보완) 이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 제정이전에 설치된 각 위원회와 각 위원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설치되고 임용된 것으로 한다.

### 부 칙 (이사회 의결/2016. 06. 27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(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 자구수정, 제4항 신설, 제5조 자구수정, 제5조의2내지 제5조의4 신설, 제6조 자구수정, 제8조 자구수정 및 항 추가, 제14조 제1항 내지 제2항 자구수정)

### 부 칙 (이사회 의결/2020. 12. 18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(제4조 자구수정, 제5조 자구수정,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5 자구수정, 제5조의6 신설, 제10조 자구수정, 제14조의제2항 자구수정)

### 부 칙 (이사회 의결/2021. 04. 26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(제5조의6제1항 내지 제2항 자구수정)

### 부 칙 (이사회 의결/2022. 06. 09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 (제14조 제3항 신설 및 제15조 신설)

### 부 칙 (이사회 의결/2022. 08. 18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6조 신설)

부 칙 (이사회 의결/2022. 12. 7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 (제5조의6 자구수정)

부 칙 (이사회 의결/2026. 1. 22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(제5조의2제1항 및 제5조의3제1항 자구수정)